

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4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9. 3.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청의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어 물품출납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본청의 물품출납원 변경

별표 1 본청의 물품출납원을 “경리담당”에서 “계약담당”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략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없음

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본청의 물품출납원란 중 “경리”를 “계약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1>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94조의2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·처분·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96조(조례의 제정·운영)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<붙임 2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의안의 시행으로 비용발생 추가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-2270